

# 임금피크제 후속조치 노사합의서

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후속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1. '조정기준임금'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년도(이하 '피크년도') 연간 총 급여(총 인건비)로 한다.
2. '연차별 임금감액분'은 1년차에 조정기준임금의 10%, 2년차에 조정기준임금의 15%로 한다.
3. 임금지급 방법은 당해 연도 임금에서 연차별 임금감액분을 매월 균분하여 차감 지급한다.
4. 임금피크제 임금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가. 대상자의 임금인상은 매년 임금협약에 따른다.
  - 나.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법은 관련법에 의한다.
  - 다. 복리후생은 차별 없이 적용한다.
5. 임금피크제에 따른 인력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가. 임금피크제로 채용되는 직원은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며, 임금피크제 대상자 결원발생시 정원내로 이체한다.
  - 나.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 별도직무를 부여하는 경우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되, 운영시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.
  - 다.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, 업무조정방안 및 퇴직 지원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.
  - 라.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피크년도 시작일 현재 재직부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.

6. 임금피크제 적용시 해석이 다르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 
노사 합의하여 시행한다.

본 합의서에 의거한 세부사항과 관련된 취업규칙, 보수규정, 인사  
규정 등 제반규정의 개정사유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 
의거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2016. 8. 31.

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

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

이 사 장 이 지 

위 원 장 김 태 